

(첨부1)

## 표준약관 개정(안) 주요내용

### 1. 개정사유

-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가 원가 되는 범위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조정

### 2. 개정내용 - 종합통장대출 원가범위 개선

-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금액이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만 원가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
- 종합통장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금리 적용범위를 한도금액으로 제한\*

\* (현행) 한도금액 + 한도를 초과하여 원가된 이자금액 → (개정) 한도금액

※ <예시> 한도 2,000만원 · 원금 1,990만원 · 월이자 20만원의 종합통장대출을 미상환하는 경우

- (현행) ① 원가일 도래시 2,010만원 전액이 원가됨  
② 원가일 도래시부터 10만원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
③ 다음 원가일 도래시부터 2,010만원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
- (개정) ① 원가일 도래시 2,000만원까지만 원가되고 10만원은 미수이자로 처리  
② 원가일 도래시부터 10만원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  
③ 다음 원가일 도래시부터 2,000만원에 대하여 연체이율 적용

### 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[첨부2] 참조

### 4. 시행일 : '19.4.1.

(첨부2)

**표준약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**

**【여신거래약정서(안)】**

| 현 행   | 개 정(안)  | 비 고  |
|---|---|--|
| <p>제2조(지연배상금) ④종합통장 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 | <p>제2조(지연배상금) ④-----<br/>-----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,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</p>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| <p>대출금이자 원가범위 개선</p>   |
| <p>제5조(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) ③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.</p> <p>④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,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.</p> | <p>제5조(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) ③ &lt; 삭제 &gt;</p> <p>④-----<br/>-----<br/>----- 이내에서만 -----<br/>-----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.</p> | <p>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원가가 불가능해짐에 따른 조문 삭제</p> <p>대출금이자 원가범위 개선</p> |